한방의료행위의 개념요소와 유형에 관한 법적 고찰

이 부 균*

Ⅰ. 서 론
Ⅱ. 의료행위의 개념과 유형
1. 의료행위의 개념
2. 의료행위의 개념요소
3. 의료행위의 개념에 대한 고찰
Ⅲ. 한방의료행위의 개념과 유형
1. 한방의료행위의 개념
2. 한방의료행위 개념요소
3. 한방의료행위의 유형
Ⅳ. 결 론

Ⅰ. 서 론

헌법 제15조에 의해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며, 이 자유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국가는 공공복리인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전문적으로 의료교육을 받은 인력으로 하여금 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에 관해 일반인의 헌법상의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회복시켜주는”[1] 면

* 논문접수: 2012.10.30. * 심사개시: 2012.11.10. * 수정일: 2012.11.25. * 게재확정: 2012.12.10.
*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약물의학부 조교수. 한의학박사

1) 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마246 결정.

허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의료법 제2조에 의료인[2]에 관한 면허를 명시하여 이들로 하여금 의료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한의약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한의약 육성법을 제정하였으며, 최근 개정법[3]에 의하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뿐만 아니라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를 한의약이라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침사, 구사(의료유사업자)의 위헌심판청구의 건[4], 의사의 침술행위에 대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사건[5], 한의사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측정기 이용 사건[6]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의료유사업자, 의료인 간의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7]로 인한 최근의 분쟁들 모두 한방의료행위와 관련되어있는 사안들이다.

II. 의료행위의 개념과 유형

1. 의료행위의 개념

가. 법률규정

우리나라 법률에 '의료행위'라는 용어는 의료법 제2, 3, 12, 14, 22, 27, 34, 64, 66, 70, 79, 90조 및 의료법 시행령에서도 자주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정의가 명문화 되어 있지는 않다. 이처럼 자주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가 규정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한다는 논란이 있다.[8] 이런 논

---

2) 의료법 제 2조 :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3) 한의약육성법(2011.7.14 일부개정) 제2조(정의) 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4) 헌법재판소: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 위헌제청 등(2010. 7. 29. 2008헌가19, 2008헌바108, 2009헌마269·736, 2010헌바38, 2010헌마275(병합)).

5) 대법원 2011.5.13. 선고 2007두18710 판결.

6) 대법원 2011.5.26. 선고 2009도6980 판결.

7)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란을 극복하기 위해 의료행위에 대한 개념을 의료법에 명문화하여 의료의 예측가능 영역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9] 명문화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의료행위는 의료기술의 발전과 관련되며, 다른 면에서는 그 행위가 갖는 위험성과 관련되는 개념이므로 시대의 인식변화에 따라서 발전하는 탄력적인 내용으로 개념정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10]

나. 외국의 입법례

(1) 일본의 경우도 입법으로 의료행위의 정의에 관해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醫療法 제1조의 2[11]와 醫師法 第四章 業務 제19조에 "진료에 종사하는 의사는 '診察治療'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것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과 제22조의 '처방전의 교부', 제22조 3호와 5호의 '藥劑의 投與', 제23조의 '요양의 방법 기타 보건향상에 필요한 사항의 지도'[12]

---

8) 헌법재판소 2010.7.29. 선고 208헌가19, 2008헌바108, 2009헌마269·739, 2010헌바38, 2010헌마275(병합) 결정요지에서 "이 사건 조항들 중 '의료행위' 및 '한방의료행위'의 개념은 건전한 일방상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파악되기 어렵다거나 법관에 의한 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고 판시하였다.

9) 곽명섭, "의료행위 개념의 법제화 논의과정에 대한 고찰",『법과 정책연구』, 제7권 제1호, 한국법정책학회, 제70면.

10) 유지태, "의료행위의 개념",『고려법학』, 제39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2, 제69면.

11) 医療法. 第一条の二 医療は, 生命の尊重と個人の尊厳の保持を旨とし, 医師, 歯科医師, 薬剤師, 看護師その他の医療の担い手と医療を受ける者との信頼関係に基づき, 及び医療を受ける者の心身の状況に応じて行われるとともに, その内容は、単に治療のみならず, 疾病の予防のための措置及びリハビリテーションを含む良質かつ適切な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http://wwwhourei.mhlw.go.jp/cgi-bin/t_docframe.cgi?MODE=hourei&DMODE=CONTENTS&SMODE=NORMAL&KEYWORD=&EFSNO=192.

12) 자료출처: http://wwwhourei.mhlw.go.jp/cgi-bin/t_docframe.cgi?MODE=hourei&DMODE=CONTENTS&SMODE=NORMAL&KEYWORD=&EFSNO=240.
医師法. 第四章 業務
第十九条 診療に従事する医師は, 診察治療の求があつた場合には, 正当な事由がなければ, これを拒んではならない.
2 診察若しくは検案をし, 又は出産に立ち会つた医師は, 診断書若しくは検案書又は出生証明書若しくは死産証書の交付の求があつた場合には, 正当の事由がなければ, これを拒んではならない.
第二十二条 医師は, 患者に対し治療上薬剤を調剤して投与する必要があると認めた場合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7조의 "의사가 아니면 醫業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의 해석에 관해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쇼와(昭和)30년 5.24 판결에서 "의학상의 지식과 기능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함부로 이를 행할 때 생리상 위험이 있는 정도에 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의료행위라고 인정함이 합당하다."[13]고 판시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의 경우 의료행위란 생명의 존중과 개인의 존엄의 유지를 주된 목적으로, 의료를 받는 사람의 심신의 상황에 응해 행하는 진찰, 치료, 처방, 투약, 요양의 방법과 보건지도 등과 의학상의 지식과 기능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행할 경우 인체의 생리상 위험을 끼치거나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개념을 정의하는 듯하지만 개별행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미국의 경우 모든 주의 의료행위를 규율하는 보편적인 법률은 없고, 각 주마다 의료행위 개념을 정의하는 법률과 용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논의하는 개념요소들은 크게 (가) 진단, 처치, 예방, 치료, (나) 의사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 (다) 보수, 선물 또는 보상을 받으려는 의사, (라) 자격부여(Attaching a Title), (마) 의료기관을 유지하는 것, (바) 수술의 시행, (사) 약의 사용, 관리 또는 처방, (아) 그 외 다양한 정의 규정들이 있으며, 이 중 (가), (나), (바), (사)의 요소의 조합이 가장 많다.[14]

(3) 독일의 경우 연방의사규정(Bundesärzteordnung) 제2조 5항[15]에 "의

には，　患者又は現にその看護に当つている者に対して処方せんを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患者又は現にその看護に当つている者が処方せんの交付を必要としない旨を申し出た場合及び次の各号の一に該当する場合にお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三 病状の短時間ごとの変化に即応して薬剤を投与する場合
五 治療上必要な応急の措置として薬剤を投与する場合
第二十三条 医師は，診療をしたときは，本人又はその保護者に対し，療養の方法その他保健の向上に必要な事項の指導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13) 한국의료법학회 보건의료법학편찬위원회, 『보건의료법학』, 동림사, 2003, 제102~103면.

14) 이인영, "의료행위의 현대적 의의와 과제", 『법과 정책연구』, 제7권 제1호, 한국법정책학회, 제29~32면.

15) http://www.gesetze-im-internet.de/b_o/BJNR018570961.html. Bundesärzteordnung. BÄO. Der ärztliche Beruf. § 2. (5) Ausübung des ärztlichen Berufs ist die Ausübung der Heilkunde

사로서의 직업 수행이란 '의사' 또는 '여의사'라는 직업표시 하에서 행하는 의술을 말하며"[16], 또한 의사를 위한(표준)직업규칙(Muster Berufsordnung) 제1조에 의사의 임무로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고 재활시키며, 고통을 줄이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조력하고, 인간의 건강을 위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자연적인 삶의 기초를 유지하는 일에 협력하는 일"[17]이라고, 제11조에 "의사는 환자를 적합한 진찰 및 진료방법으로 성실하게 돌볼 의무가 있다."[18]라고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이 법률, 판례와 규칙 등의 규정으로 보아 독일의 경우 의료행위를 의사 또는 여의사라는 직업표시 하에서, 사람의 생명의 유지, 건강 보호, 재활, 고통의 감소와 자연적인 삶의 기초를 유지하는 일에 협력하기 위해 행하는 적합한 진찰 및 진료방법이라 규정한다고 볼 수 있겠다.

다. 학설

(1) 의료행위에 관한 우리나라의 학설로는 판례의 내용을 보충하여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요양지도행위와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19]라는 설,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행위로 한정하여 엄격하게 해석하고 정의[20]해야 한다는 설,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써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문진·타

---

unter der Berufsbezeichnung "Arzt" oder "Ärztin".

16) 대한의사협회 기획정책실,『외국 의료관련 법률 시리즈 II-독일편』, 대한의사협회, 2006, 제1면.

17) 대한의사협회 기획정책실,『외국 의료관련 법률 시리즈 II-독일편}, 대한의사협회. 2006, 제71면.

18) 대한의사협회 기획정책실,『외국 의료관련 법률 시리즈 II-독일편』, 대한의사협회. 2006, 제74면.

19) 유지태, 전게서, 제72면.

20) 길준규, "의료행위의 개념과 범위",『공법논총』, 제2호, 광주전남공법학회, 2006, 제84면. : 그럼으로써 '건강관리(Telehealthcare)와 대체의료 분야를 의료행위의 개념에서 제외시켜줄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음.

진·청진·각종 검사 등에 의한 질병의 진단, 주사, 투약, 약물의 도포, 외과수술과 치료, 재활(Rehabilitation) 등의 예후적 치료행위, 기타 질병의 예방 내지 공중위생을 위한 처치를 포함한 모든 의료종사자의 직무상의 행위를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의사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면, 생리상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진료행위[21]라는 설 및 질병의 예방 및 치료, 고통의 감소, 생명의 연장, 기형의 교정, 조산과 의술적 낙태, 치료목적을 위한 환자에 대한 임상실험, 의료기술의 진보를 위한 실험 등 일반적으로 승인된 것 이외에 신생아·사체 등의 인도, 의무기록의 작성 등 부수적인 것까지 포함되는 넓고 발전적 개념[22]이라는 설이 있다.

(2) 일본의 학설로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질병의 치료, 질병의 경감, 질병의 예방, 기형의 교정, 조산과 의술적 낙태, 치료목적을 위한 환자의 시험, 의술상의 진보를 위한 실험 등 6가지"[23]를 의료행위의 개념으로 본다.

(3) 독일의 경우는 "의술(Heilkunde)의 제인식과 제경험 및 양심적인 의사의 기본원칙에 따라 질병 혹은 고통을 저지하거나 진단, 치료 혹은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실시되는 침습(侵襲), 기타 여러 가지의 처치"를 말한다.[24]

라. 판례

의료행위의 개념에 대한 판례는 1. 의료의 개념을 협의로 해석한 판례[25], 2. 의료행위의 구체적 태양을 예시한 판례[26], 3. 의료행위 개념에 '진찰', '진단방법'과 '치료행위'에 관해 예시한 판례[27], 4. 의료행위의 개념에 '공중위생상의

---

21) 이덕환, 『의료행위와 법』, 현문사, 2010, 제11면.
22) 신현호·백경희, 『의료분쟁 조정·소송 총론』, 육법사, 2011, 제32면.
23) 大谷 實, 『醫療行爲と 法』, 弘文堂, 1980, 제3면 이하. 재인용: 범경철, "의료행위 개념의 확대", 『의료법학』, 제5권 제1호, 대한의료법학회, 2004, 제661면.
24) 1960년 독일형법개정초안 제161조. 재인용: 이재석, "의료행위의 현대적 의의와 과제", 『대구법학』, 제4호,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2001, 제69면.
25) 대법원 1972.3.28. 선고 72도342 판결.
26) 대법원 1974.11.26. 선고 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
27) 대법원 1978.9.26. 선고 77도3156 판결.

위험'과 '사회통념'개념이 도입된 판례[28]와 같이 변화함으로써, 협의의 의료개념에서 최광의의 의료개념으로까지 확대되며 그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들도 예시함에 따라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태를 관찰하여 병상과 병명을 규명·판단하는 작용으로 그 진단 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위와 같은 작용에 의하여 밝혀진 질병에 적합한 약품을 처방, 조제, 공여하거나 시술하는 것이 치료행위에 속한다."[29]라는 것으로 정립되었다.

2. 의료행위의 개념요소

의료행위의 개념요소의 분석에 관하여 유지태는 정형적인 행위인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요양지도행위"와 비정형적인 행위인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30]로 길준규는 "1)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2)사람의 생명 등에 대한 위험의 발생, 3)기타 판례상 판단기준"[31], 이상돈·김나영은 의료 개념의 실질을 주체차원, 수단차원, 행위차원으로 분석하며, 행위차원에 행위의 유형과 위험성을, 수단차원에 기기나 재료의 위험성을, 주체차원에 기기자체의 위험성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른 위험성 포함시켰다.[32]

---

28) 대법원 1974.11.26. 선고 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
29) 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도2328 판결.
30) 유지태, 전게서, 제73~81면.
31) 길준규, 전게서, 제71~75면.

본 논문에서는 의료행위의 개념요소로서의 목적, 주체, 행위의 내용 및 보건위생상 위해 등을 포함하고 있는 유지태의 분석 틀을 근간으로 정형적인 행위에 (1) 행위의 목적성, (2) 행위의 주체, (3) 행위의 대상, (4) 행위의 내용, (5)행위의 객체를 포함시키고, 비정형적인 행위에 기타의 위험성을 포함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가. 정형적인 행위

(1) 행위의 목적성: 의료행위는 고통 혹은 질병을 저지하거나, 완화하거나, 치료하기 위해 또는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 져야 한다.

(2) 행위의 주체: 의료법상의 의료인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3) 행위의 대상: 치료해야 할 객체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의 문제로서, 치료를 요청하는 사람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이거나, 실제적이든지 상상적이든지, 관계없이 호소하는 괴로움, 질병, 통증, 상해, 신체장애, 이상상태, 병약, 외상 등[33]이 해당된다 할 것이다.

(4) 행위의 내용: 의료행위의 개념 중 진료행위라고도 할 수 있으며, 표현은 다양하나 진단과 치료로 대별할 수 있다. 진단에는 진찰, 검사, 처방이 포함되며, 치료는 진단을 근거로 치료방법에 적합한 약물의 투약, 치료방법의 시술, 요양지도, 기타 행위가 포함된다.

(5) 행위의 객체: 사람이며 환자에 한정되지 않는다.[34]

나. 비정형적인 행위(기타의 위험성)

의료인의 의학적인 판단 및 기술에 의하지 않으면 인체에 생리상 위험을 초래

---

32) 이상돈 · 김나경, 『의료법강의』, 1판, 법문사, 2009, 제3~7면.

33) http://apps.leg.wa.gov/rcw/default.aspx?cite=18.71.011.

34) 이인영, 전게서, 제34면: "행위의 대상은 환자이며, 이에는 태아가 포함되며, 시체에 대한 행위는 제외된다"고 하였으며, 신현호 · 백경희, 전게서, 제32면에서는 "'사체의 인도'도 의료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다.

할 염려가 있고,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로, 위험성이라는 것은 구체적일 필요는 없고 추상적[35]이기만 하여도 된다. 이처럼 추상성의 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의료주체의 전문성에 대한 판단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으나[36], 그 시술방식이 정형적인 경우가 아닌 경우도 의료행위의 대상행위로 포섭하기 위한 것[37]이다. 판례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료행위에 해당한다."[38]라고 판시하였다.

3. 의료행위의 개념에 대한 고찰

이상과 같이 의료행위에 대한 입법례, 학설, 판례를 바탕으로 한 개념요소에 따라 본 글에서는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괴로움, 질병, 통증, 상해, 신체장애, 이상상태, 병약, 외상 등을 호소하는 사람에게 고통 혹은 질병 등을 저지·완화·치료하기 위해 또는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생리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본다.

III. 한방의료행위의 개념과 유형

1. 한방의료행위의 개념

가. 대부분 국가의 전형적인 의료체계는 일원적으로 되어있으며 각 국의 전통의학은 보완·대체의학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통의학이 전형적인

---

35)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6도6870 판결: 여기서 말하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며….

36) 김나경, "의료 개념의 다층적 이해와 법", 『의료법학』, 제11권 제2호, 대한의료법학회, 2010, 제82면.

37) 유지태, 전게서, 제79-80면.

38) 대법원 2009.9.8. 선고 2000도432 판결.

의료로서 국가 의료체계의 한 분야를 이루는 것은 우리나라의 한의학, 중국의 중의학 등 몇 나라에 불과하다. 이에 의료행위에 포함되는 한방의료행위의 개념과 개념요소 및 유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법률규정

의료법 제2조 제3항에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한의약육성법 제2조에 한의약을 정의하기 위해 "한방의료행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다. 학설

한방의료행위에 관한 학설로는 의료행위의 학설을 원용하여 정의하는 경우가 많다. 즉 "의료행위의 하나로서 한의사에 의하여 수행되며 한의학을 기초로 하는 것"[39]이라는 설, "사회통념상 우리의 옛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이며, 광의의 의료행위의 한 범부로 한의사에 의하여 수행되어지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40]라는 설 등이 있다.

라. 판례

한방의료행위의 개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헌법재판소의 경우 "한방의료행위는 우리의 옛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41]이라 정의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의 경우 "한방의료행위는 사회통념상 우

---

39) 하재홍, "한방의료행위", 『경기법학논총』, 제6호, 경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제39면.
40) 이미선·권영규, "판례분석을 통한 한방의료행위 개념의 법적 근거 고찰", 『한국한의학연구논문집』, 제15권 제3호, 2009, 제27면.
41) 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3헌바65 결정, 2003. 2. 27. 선고 2002헌바23 결정.

리의 옛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 중략 … 어떠한 진료행위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해당 진료행위가 학문적 원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42]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의 경우 판례에서 "우리의 옛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인용하였다.[43]

2. 한방의료행위 개념요소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판례를 바탕으로 하여 개념요소를 구분한 연구로는 질병의 진단, 처방, 치료와 의료인이 행하지 않을 경우 공중보건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의 두 가지로 구분한 것[44]과 질병의 예방과 치료, 학문적 원리를 한의학에 기초한 행위,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 한의사에 의한 행위를 기준으로 한 것[45]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방의료행위 개념요소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로서 위의 의료행위 개념요소에 사용한 방법을 적용하며 그 중 정형적인 행위에 한의학적 학문적 원리와 "행위의 내용" 중 변증, 변증논치, 시치 및 투약과 관련된 '제조'를 개념요소에 포함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가. 정형적인 한방의료행위의 개념요소

(1)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

(가) 음양학설(陰陽學說)

음양학설이란 양과 음의 두 대립적 개념의 생기고, 자라고, 사라지는 변화로

---

42) 서울행정법원 2008.10.10. 선고 2008구합11945 판결.
43) 대법원 2011.5.13 선고 2007두18710 판결.
44) 하재홍, 전게논문, 제150면.
45) 이미선·권영규, 전게서, 제21면.

자연을 인식하고 자연현상을 해석하는 철학적 범주이며 음양은 서로 상대적인 속성으로서『素問』·陰陽應象大論篇 第五에 陰陽者 天地之道也 萬物之綱紀 變化之父母 生殺之本始 神明之府也[46]라는 구절과 陰陽者 萬物之能始也[47]라는 표현에서 음양은 모든 것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道이며 紀綱이며 근본이며 시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음양은 엄격하게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素問』·天元紀大論篇 第六十六의 陽中有陰 陰中有陽, [48] 등의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자체가 상대적이며 한 사물이나 현상의 두 가지 다른 속성일 뿐이므로 끝없이 분화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자연의 일부인 인체와 인체의 질병을 해석하고 및 치료방법까지도 도출해내는 한의학의 학문원리 중의 하나이다.

(나) 한의학적 整體觀念

한의학적 이론의 기초로서의 整體觀은 인체 각 부분의 통일성과 完整性을 중시하며, 인간이 자연의 일부분이므로 인간과 자연의 통일성과 完整性도 중시하는 개념이다. 즉 인체를 하나의 有機體로 생각하여, 인체를 구성하고 활동하게 하는 요소인 氣, 血, 津液, 臟腑, 經絡 등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생리기능 활동에 상호협조, 相互爲用하며, 질병과정 중에도 상호 영향을 끼쳐 병리변화를 일으킨다고 본다. 그러므로 한의학은 정체관적 관점에서 국부의 병변은 반드시 전신의 기혈과 음양에 영향을 미치고 각 장부 사이 생리기능의 평형협조에 영향을 미치므로 외재적인 임상표현을 관찰하여 그 내재된 전신 혹은 부분의 병리변화를 분석한다.[49]

(다) 한의학적 질병관

한의학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邪氣라 하며 사기의 종류에는 외부에서

---

46) 王冰 編注, 黃帝內經素問, 대성문화사, 1994, 제33면.
47) 王冰, 전게서, 제49면.
48) 王冰, 전게서, 제403면.
49) 나창수 외 17인 교수,『韓醫學 總綱』, 1판, 의성당, 2007, 제26-28면.

들어오는 外邪와 七情, 飮食傷, 勞倦傷 등이 있다. 이러한 사기에 대하여 우리의 몸을 방어하며 정상적으로 유지하려는 氣를 正氣라 한다.『素問』· 評熱病論篇 第三十三에 邪之所湊 其氣必虛[50](사기가 모인 곳은 그곳의 정기가 비어있기 때문이다)라고 표현되었듯이 한의학의 질병관은 이와 같은 正氣와 邪氣의 불균형에 의한 것이다.

(라) 한의학적 치료원칙

한의학의 치료의 기본은 정체적인 관점에서 보아 깨어진 음양의 균형을 바로 잡아 균형을 유지하려는 것이며 이를 위한 치료의 원칙들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陰陽和平: 자연과 인간과의 음양의 조화를 좇아 인체의 精·神·氣·血 및 각 臟腑, 五官, 五體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2) 扶正祛邪: 正氣를 북돋우고 邪氣를 몰아내는 것, 3) 標本辨治: 일반적으로 병의 치료는 반드시 그 근본에서 찾아야 하나, 급한 경우이면 겉으로 드러난 증상을 먼저 치료하고, 완화되면 근본의 병을 치료 하여야 한다(治病必求於本 急則治標 緩則治本). 4) 三因制宜: 질병을 치료할 때 반드시 때, 지역, 사람을 살펴 각각의 개별적인 요인에 마땅하게 정하여야 한다는 것, 5) 病治異同: 같은 질병도 病態, 病因, 病位가 다르면 치료방법이 달라야 하며, 다른 질병이라도 그 진행과정 중에 나타나는 증상이 같으면 같은 치료방법을 사용한다는 개념 등이다.

(2) 진찰(사진(四診))

진단은 진찰과 변증으로 구분된다. 사진이란 망진·문진(聞診)·문진(問診)·절진을 일컫는 말이며, 환자에게서 입수한 정보를 분류하여 변증하기 위한 것으로 진단의 일차적인 단계이며 한방 진단의 공통이다.[51] 한의학의 四診은 神形色脈을 관찰하여 그 변화를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며 여기서 精神, 身形, 色의

50) 王冰, 전게서, 제219면.
51) 김경철 . 이용태, "변증시치의 위상·한계성 극복의 기초적인 연구",『동의논집』, 제33집, 동의대학교, 2008, 제354면.

진찰은 외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잇몸, 혀, 인후 등을 포함하여 내부라도 볼 수 있는 부분은 모두 보는 것이다. 이로써 인체 내부 장기인 오장 육부의 변화 상태를 알고자 하였으며 그 당시 의료현실의 과학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3) 辨證

이는 한의학에서 병증을 변별하고 판단하고 분류하는 독특한 개념으로서 "질병(또는 준 질병 상태)진행 과정의 한 시점에 나타난 증상·징후의 조합"[52]인 證에 대한 인식으로서 객관적 존재에 반영되는 한의사의 주관이며, "환자에게 발현된 질환상태로부터 '證'을 감별하여 병리적 본질을 규명하고 확정하는 행위로서 획득한 환자의 임상 자료에 대해 종합 분석을 하여 질병의 병리본질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증명진단을 도출하는 과정"[53]이다. 이러한 辨證 방법으로는 (가) 질병의 상태를 寒·熱·虛·實·表·裏·陰·陽으로 분류하여 치료의 大法을 제공하는 방법인 八綱辨證, (나) 張仲景의 傷寒論에서 太陽病, 陽明病, 少陽病, 太陰病, 少陰病, 厥陰病 등의 병증 명으로 구체화 된 傷寒六經辨證, (다) 인체 장기인 臟과 腑의 生理的 機能, 病理的 表現과 臟腑 상호간의 관계에 의해 질병의 진행을 분석하고 해당 장부에 구체적으로 歸屬시키는 臟腑辨證, (라) 한의학에서 인체를 구성하고 움직이게 하는 기본요소인 氣, 血, 津液의 虧損 혹은 減退로 인한 증후를 변증하는 氣血陰陽津液辨證, (마) 증후를 살펴 변증함으로써 병인을 알아내는 病邪辨證 및 (바) 선천적으로 타고난 장부의 생리적 불균형의 구조와 性情에 따라 병의 증후의 차이가 있으므로 體形氣象·性質才幹·恒心·容貌詞氣·完實無病·特異病證 類型·病症藥理 등의 특성들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체질을 구분하는 體質辨證 방법 등이 있다.

---

52) 김기왕, 『인체질환의 인식과 해석 II』, 부산대학교한의학전문대학원, 2010, 제17면.
53) 신상우, 『인체질환의 인식과 해석 II』, 부산대학교한의학전문대학원, 2010, 제6면.

(4) 辨證論治

변증에 의거하여 그에 상응하는 治法을 결정하는 것으로 처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치법의 예로서는 (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증상의 드러난 현상과 반대의 방법을 사용하여 病氣를 약하게 해서 내보내어 다시 원래의 정상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正治法[54], (나) 병이 인체의 上, 下, 表, 裏의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가장 쉽게 그 邪氣를 쫓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치료하는 病位에 따른 치법[55], (다) 질병의 정황과 진행 상태에 따라 치료방법을 달리하는 病情에 따른 치법[56] 및 (라) 변증에 따른 汗, 和, 下, 消 ,吐, 淸, 溫, 補法의 八法[57] 등이 있다.

(5) 施治

이는 "변증에 의거하여 해당하는 처방을 선택 또는 구성하여 치료대책을 세우는 것으로서, 즉 병에 대한 신체적 반응을 변별하여 치료"[58]하는 것을 뜻하며 이에는 (가) 한의사에 의한 한약의 조제와 제조[59], (나) 처방에 따른 한약 복약 및 치료를 위한 외용 약물의 도포 등을 포함하는 투약, (다) 투약과 요양

---

54) 『素問』·至眞要大論篇 第七十四의 "… 寒者熱之 溫者淸之 淸者溫之 散者收之 抑者散之 燥者潤之 急者緩之 堅者軟之 脆者堅之 衰者補之 强者瀉之"

55) 『素問』·陰陽應象大論篇 第五의 "其高者 因而越之 其下者 引而竭之 中滿者瀉之於內. 其有邪者 漬形以爲汗 其在皮者 汗而發之"

56) 『素問』·陰陽應象大論篇 第五의 "其慓悍者 按而收之 其實者散而瀉之. 血實宜決之 氣虛宜掣引之"와 『素問』·至眞要大論篇第七十四의 "高者抑之 下者擧之 有餘折之 不足補之"

57) 程國彭, 醫學心悟: 1) 汗法 : "汗者, 散也. 經云 邪在皮毛者 汗而發之是也. 又云 體若燔炭 汗出而散是也. 2) 和法: "傷寒在表者 可汗 在裏者 可下 其在反表反裏者 惟有和之一法焉." 3) 下法: "下者 攻也 攻其邪也." 4) 消法: "消者 去其壅也. 臟腑 筋絡 肌肉之間 本無此物而忽有之 必爲消散 乃得其平." 5) 吐法: "吐者 治上焦也. 胸次之間 咽喉之地 或有痰 食 癰膿 法當吐之." 6) 淸法: "淸者 淸其熱也. 臟腑有熱 則淸之." 7) 溫法: "溫者 溫其中也. 臟受寒侵 必須溫劑." 8) 補法: "補者 補其虛也. 經曰 不能治其虛 安問其餘. 又曰 邪之所湊 其氣必虛. 又曰 精氣奪則虛."

58) 이장천, "辨證施治와 定病專方", 『대한한의방제학회지』, 제10권 제1호, 대한한의학방제학회, 2002, 제30면.

59) 안법영, "의료와 제조물책임", 『고려법학』, 제40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3, 제179면: "제조란 생산물의 설계, 가공, 검사, 표시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로써 일반적으로 원재료에 어떤 부가적인 작업을 통하여 물품을 만드는 생산보다는 좁은 개념".

지도행위를 제외한 침, 뜸, 부항 등의 한방치료행위와 한방처치술 및 한방정신과적인 치료를 포함하는 시술, (라) 의료법 제24조에 의한 한방요양방법의 지도이외에 한방재활 및 예후적 치료행위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요양지도행위가 포함된다.

나. 비정형적인 한방의료행위의 개념요소

이는 정형적인 한방의료행위의 개념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 중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방의료행위에 포섭시키기 위한 개념요소이다. 이에 관하여는 의료행위의 위험성과 마찬가지로 주로 판례에 의해 정립되고 있으며 한방의료행위의 위험성에 관해서는 '침술행위는 경우에 따라서 생리상 또는 보건위생상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것이어서 한방의료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60]라는 판례와 '환자의 병명과 병상에 대한 진단을 통하여 그 환자의 상태에 맞는 한약재를 선택하는 처방으로서 행하여진 것이며, 그 처방에 따른 효과가 어떠한 것인지 아직 체계적 ·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국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행위는 구 의료법상 한의사의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포함'[61]된다고 판시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행위의 위험성을 근거로 한방의료행위로 규정하였다.

3. 한방의료행위의 유형

전통문헌에 나타난 한방의료행위의 유형으로서는 養生法, 정신요법과 導引按摩, 針石, 灸, 熨, 百藥, 膏摩, 湯液醪醴, 附缸 등이 있다.

판례에 예시된 한방의료행위의 유형으로서는,

가. 10 mA/분 이하의 엑스선 골밀도측정기 사용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

---

60) 대법원 1996. 7.30. 선고 94도1297 판결, 대법원 1999.3.26. 선고 98도2481 판결.
61)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6도6870 판결.

례[62]가 학문적 근거를 이유로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유형을 구분하였으며,

나. 진찰 진단을 한방의료행위로 판시한 판례로는 대법원 1978.9.26. 선고 77도3156 판결[63]과 대법원 1981.12.22. 선고 80도2974 판결[64]이 있다. 그러나 단지 진찰만하고 진단을 내리지 않은 경우는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01.7.13 선고 99도2328판결도 있으므로 단순한 진찰행위만 하고 진단을 내리지 않으며 그 후 약재의 판매행위의 근거로 활용한 경우가 아니면 한방의료행위라 할 수 없다.

다. 조제·제조·투약에 관해서는 대법원2002.12.26 선고 2002도2077 판결[65]은 조제행위만 단독으로 한방의료행위라고 판시한 것이나, 대법원 1996.10.25 선고 96도1088, 대법원 1993.8.27 선고 93도153 판결처럼 조제, 제조와 투약은 진찰과 연계되어 이루어진다.

라.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의료행위에는 당연히 침술행위가 포함된다."[66] 고 판시하였으며, 수지침에 관해서는 "수지침 시술행위도 위와 같은 침술행위의 일종으로서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67]한다 하였고, 벌침, 봉침에 관해서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인체에 벌침, 쑥뜸 등의 시술행위를 하였다면 그것이 의료기구, 또는 의약품에 해당하는 여부나 실제로 그 효험이 있는 여부에 관계없이 이는 금지된 의료행위",[68]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신체에

---

62) 서울행법 2008.10.10. 선고 2008구합11945 판결: 어떠한 진료행위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해당 진료행위가 학문적 원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63) "콧속을 들여다 본 행위는 일종의 시진이라 할 것이고 그 질환을 비염이라고 단정한 것은 관찰한 결과로 내려진 판단이라 할 것이며 … 위 소위는 의료법 제25조에 규정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64) "맥을 짚고 어깨 및 허리 등을 눌러 본 행위는 일종의 촉진이라고 할 것이고, 그 질환을 신경성 심장병이라고 단정한 것은 … 중략 … 소위 치료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것".

65) "황기, 진피 등을 섞은 한약을 조제하여 주어 한방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66) 대법원 1994.12.27. 선고 94도78 판결.

67) 대법원 2000.4.25. 선고 98도2389 판결.

68)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도1892 판결.

벌침의 시술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의료행위"[69]라 하였다.

마. 뜸 시술은 예로부터 전승되어 내려오는 한방의료행위이나 민간에서도 오래전부터 자주 행하여지던 치료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판례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인체에 벌침, 쑥뜸 등의 시술행위를 하였다면 그것이 의료기구, 또는 의약품에 해당하는 여부나 실제로 그 효험이 있는 여부에 관계없이 이는 금지된 의료행위를 한 것"[70]이며, "침구행위는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경혈에 침을 놓거나, 뜸을 뜨는 행위인바, 시술자가 인체의 어느 부위에 어떤 침이나 뜸을 어느 정도, 어떤 방법으로 놓을 것인가는 환자의 질병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 중략 … 침구행위는 의료행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71]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쑥뜸기를 이용한 쑥뜸 시술 행위는 그 내용과 수준으로 보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례[72]와 쑥뜸시술을 한 행위는 그 내용과 수준으로 보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한 판례[73]도 있다.

바. 부항시술에 관해서는 "그 부위에 부항을 뜬 후 그 곳을 부항침으로 10회 정도 찌르고 다시 부항을 뜨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여 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15,000원 또는 25,000원을 받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74]라고 판시함으로써 부항이 한방의료행위의 한 유형에 속함을 밝혔다.

---

69) 대법원 1994.4.29. 선고 94도89 판결.
70)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도1892 판결.
71) 서울지방법원 2000.2.1. 선고 99노6870 판결.
72) 대법원 2010.6.24 선고 2009노1084 판결.
73) 대법원 2012. 9.13 선고 2011도 10990 판결.
74) 대법원 2004.10.28. 선고 2004도3405 판결.

IV. 결 론

법에서의 개념은 단순한 일상 언어적 의미 관련성외에도 이를 통하여 포섭하고자 하는 현실 관련성 및 규범적 관련성을 갖는 것이며, 법적 개념의 의미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당해 법률의 전체 질서 체계를 논의의 전제로 하여야 한다.[75]고 한다. 그러므로 의료 관련 법규인 의료법과 한의약육성법의 전체적인 틀 속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의 개념요소인 '행위의 목적성', '행위의 주체', '행위의 대상' 및 '기타의 위험성'이라는 공통적인 부분과 '행위의 내용' 중 한방의료행위의 개념요소의 특수한 부분인 '한의학적 원리', '변증'과 치료에서의 '제조'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이로부터 한방의료행위의 개념을 정의하자면 '한방의료행위는 사람의 고통이나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와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과 이를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의학적 원리를 기초로 하여 한의사가 행하는 검사, 진찰, 변증, 처방, 제조, 치료 및 한방요양지도와 한의사가 행하지 아니하면 인체에 생리상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방의료행위도 과학의 발전과 사회적 변화에 따라 가변적이어야 하며, 특히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하며 '국민건강의 증진' 등의 목적을 구현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며 규범적으로 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 개념요소, 한방의료행위의 유형

75) Wank, Die juristische Begröffsbildung, 1985, S. 151. 재인용: 유지태, 전게서, 제62면.

〔 참 고 문 헌 〕

곽명섭, “의료행위 개념의 법제화 논의과정에 대한 고찰”, 『법과 정책연구』, 제7권 제1호, 한국법정책학회, 2007.

길준규, “의료행위의 개념과 범위”, 『공법논총』, 제2호, 광주전남공법학회, 2006.

김경철 · 이용태, “변증시치의 위상·한계성 극복의 기초적인 연구”, 『동의논집』, 제33집, 동의대학교, 2008.

김기왕, 『인체질환의 인식과 해석 II』, 부산대학교한의학전문대학원, 2010.

김나경, “의료 개념의 다층적 이해와 법”, 『의료법학』, 제11권 제2호, 대한의료법학회, 2010.

나창수 외 17인 교수, 『韓醫學 總綱』, 1판, 의성당, 2007.

범경철, “의료행위 개념의 확대”, 『의료법학』, 제5권 제1호, 대한의료법학회, 2004.

신상우, 『인체질환의 인식과 해석 II』, 부산대학교한의학전문대학원, 2010.

신현호 · 백경희, 『의료분쟁 조정·소송 총론』, 육법사, 2011.

안법영, “의료와 제조물책임”, 『고려법학』, 제40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3.

王冰 編注, 黃帝內經素問, 대성문화사, 1994.

유지태, “의료행위의 개념”, 『고려법학』, 제39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2.

이덕환, 『의료행위와 법』, 현문사, 2010.

이미선 · 권영규, “판례분석을 통한 한방의료행위개념의 법적 근거 고찰”, 『한국한의학연구논문집』, 제15권 제3호, 한국한의학연구소, 2009.

이상돈 · 김나경, 『의료법강의』, 1판, 법문사, 2009.

이인영, “의료행위의 현대적 의의와 과제”, 『법과 정책연구』, 제7권 제1호, 한국법정책학회, 2007.

이장천, “辨證施治와 定病專方”, 『대한한의방제학회지』, 제10권 제1호, 대한한의학방제학회, 2002.

이재석, “의료행위의 형법적 평가”, 『대구법학』, 제4호,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2001.

하재홍, “한방의료행위”, 『경기법학논총』, 제6호, 경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대한의사협회 기획정책실, 『외국 의료관련 법률 시리즈 I II-독일편』, 대한의사협회. 2006.

한국의료법학회 보건의료법학 편찬위원회, 『보건의료법학』, 동림사, 2003.

전자매체 자료:

http://apps.leg.wa.gov/rcw/default.aspx?cite=18.71.011.

http://wwwhourei.mhlw.go.jp/cgi-bin/t_docframe.cgi?MODE=hourei&DMODE=CONTENTS&SMODE=NORMAL&KEYWORD=&EFSNO=192.

http://wwwhourei.mhlw.go.jp/cgi-bin/t_docframe.cgi?MODE=hourei&DMODE=CONTENTS&SMODE=NORMAL&KEYWORD=&EFSNO=240.

http://www.gesetze-im-internet.de/b_o/BJNR018570961.html.

Study on Conceptual Factors and Types of Korean Medical Practice

Boo-Kyun, Lee

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Korean Medicine

=ABSTRACT=

Medical Act. article 2 (3) stipulates that “a korean medicine doctor is in charge of providing korean medical practices and korean medical health guidance”. But, without a definition article about korean medical practice, the legal concept of it is defined by supreme court cases according to specific legal trials.

To establish the concept of korean medical practice, it must be included that the common parts of practice of medicine involving “the purpose of practice”, “the subject of practice”, “the object of practice” and “other dangers”, as well as the special parts of conceptual elements of korean medical practice involving “korean medicine principle” and “differentiation” and also “manufacturing of korean medicine”.

Accordingly, the definition of korean medical practice is defined as examining, diagnosing, differentiating, prescribing, manufacturing of korean medicine, treating, korean medical care guiding so as to treat diseases and to promote and to maintain health, based on korean medicine as traditionally handed down from the nation’s ancestors and korean medicine principle which is scientifically developed and applied and also includes a practice that will cause physiological danger to human body and/or bring harm to public health and sanitation if it is not perfomed by korean medicine doctor.

Keyword: Practice of medicine, Korean medical practice, Conceptual elements of korean medical practice.